

200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200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2006년 7월 14일 종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 추경예산(안) 편성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A)	기 정 예 산(B)			금 회 추 경	증가율 (%)
		소 계	당초예산	간주처리		
합 계	219,250,987	193,652,400	185,243,097	8,409,303	25,598,587	13.2
일반회계	182,154,449	162,727,395	154,287,092	8,440,303	19,427,054	11.9
특별회계	37,096,538	30,925,005	30,956,005	△31,000	6,171,533	20.0
의료급여	41,394	42,270	42,270	-	△ 876	△2.1
주차장	37,055,144	30,882,735	30,913,735	△31,000	6,172,409	20.0

※ 세입 간주처리(9회)

(단위 : 천원)

구 분	계		조정교부금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		기 금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액
합 계	59	8,409,303	9	6,277,752	9	37,701	38	2,074,784	3	19,066
일반회계	57	8,440,303	9	6,277,752	9	37,701	36	2,105,784	3	19,066
특별회계	2	△31,000		-		-	2	△31,000		-

II. 추경재원 — 25,598,587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계	순세계잉여금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사 용 잔 액
합 계	25,598,587	21,861,746	2,000,000	1,736,841
일반회계	19,427,054	15,990,906	2,000,000	1,436,148
특별회계	6,171,533	5,870,840	-	300,693
의료급여	△ 876	-	-	△ 876
주차장	6,172,409	5,870,840	-	301,569

III. 세출예산

□ 위원회별 세출예산 규모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감	구성비
합 계	182,154,449	162,727,395	19,427,054	100
운영위원회	2,233,942	2,124,538	109,404	1.2
시민행정위원회	161,906,316	144,985,387	16,920,929	88.9
재무건설위원회	18,014,191	15,617,470	2,396,721	9.9

<특별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감	구성비
합 계	37,096,538	30,925,005	6,171,533	100
시민행정(의료급여기금)	41,394	42,270	△ 876	0.1
재무건설위원회(주차장)	37,055,144	30,882,735	6,172,409	99.9

□ 재원배분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계			경 상 비		투자사업비	
	건수	금 액	구성비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합 계	118	19,427,054	100	65	10,666,711	53	8,760,343
운 영 위 원 회	11	109,404	0.6	9	101,552	2	7,852
시민행정위원회	79	16,920,929	87.1	50	10,539,554	29	6,381,375
재무건설위원회	28	2,396,721	12.3	6	25,605	22	2,371,116

※ 세출경정(투자사업비)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과목	예산액	기정예산	경정액
종로노인종합복지관 건립비	시설비	1,400,000	2,000,000	△600,000
종로노인종합복지관 물품구입	자산취득비	600,000	-	600,000

<특별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계			경 상 비		투자사업비	
	건수	금 액	구성비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합 계	8	6,171,533	100	7	6,116,233	1	55,300
의료급여특별회계	1	△ 876	0.0	1	△ 876		-
주차장특별회계	7	6,172,409	100	6	6,117,109	1	55,300

□ 주요 편성내역(시민행정위원회 소관)

○ 경 상 비	_____	10,538,678천원
- 일반·기능직 공무원 인건비		1,993,912천원
- 환경미화원 퇴직금 등 인건비		2,561,158

- 기본업무추진여비 인상분	1,334,780
- 연금·국민건강보험부담금	1,837,336
-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	1,701,115 등
○ 투자사업비	6,381,375천원
- 종로문화체육센터 건립공사	3,486,973천원
- 무악동청사 건립공사	936,161
-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 적립	1,000,000 등

IV. 검토의견

□ 추경예산안 규모

- 200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총 2,192억 5,098만 7천원으로서 기정예산대비 255억 9,858만 7천원이 증가(13.2%)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821억 5,444만 9천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194억 2,705만 4천원이 증가(11.9%)하였고, 특별회계는 370억 9,653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1억 7,153만 3천원이 증가(20.0%)하였습니다.
- 또한 연초부터 9회에 걸쳐 총 84억 930만 3천원의 간주처리가 있었는데, 일반회계는 84억 4,030만 3천원이 증액된 반면, 특별회계는 3,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 추경재원

- 추경재원은 총 255억 9,858만 7천원으로서, 일반회계는 2005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59억 9,090만 6천원과 조정교부금 20억원 및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4억 3,614만 8천원을 합한 194억 2,705만 4천원이고,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58억 7,084만원과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3억 156만 9천원을 합한 61억 7,240만 9천원입니다.

□ 세출예산(시민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619억 631만 6천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169억 2,092만 9천원이 증가하여 일반회계 총예산의 88.9%를 점유하게 되었으며, 증액된 내용은 경상비 105억 3,955만 4천원과 투자사업비 63억 8,137만 5천원으로 일반회계 추경재원의 87.1%가 배분되었습니다.
- 이를 경비성질별로 세분해 보면, 총 편성규모 169억 2,092만 9천원 중 인건비가 45억 5,507만원(26.9%), 경상적경비 37억 9,612만 2천원(22.4%), 사업비 56억 2,949만 8천원(33.3%), 지방채상환 1,912만 4천원(0.1%), 반환금 및 기금전출 등 기타예산 29억 2,111만 5천원(17.3%)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94억 6,462만 5천원이 법정 또는 의무경비로서 전체의 55.9%를 차지하고 있고, 이를 제외한 실질적인 가용재원내 편성규모는 74억 5,630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 법정·의무경비 편성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편 성 내 용	비 고
인 건 비	· 일반·기능직 호봉승급 등 기본급 부족액 : 1,625,369 · 초과근무수당 상향조정 따른 부족액 반영 : 368,543 · 환경미화원 퇴직금(18명)등 인건비 부족액 : 2,561,158	120,130쪽 " 132쪽
경 상 적 경 비	· 여비단가 인상으로 기본업무추진여비 증액 : 1,334,780 · 당직수당 인상따른 일·숙직비 부족액 반영 : 17,200 · 연금·국민건강보험부담금 부족액 보전 : 1,837,336	120,131쪽 124,130쪽 126,131쪽
채무상환	· 지방채 이자상환 : 19,124	139쪽
기 타	·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 : 1,701,115	121,136, 138쪽
합 계	9,464,625천원 (총 편성규모 16,920,929천원의 55.9%)	

○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 홍보영상물 제작<119쪽> : 2,500만원

우리구가 자체 촬영하여 보유하고 있는 영상물 자료를 활용하여 새로워진 우리구의 모습과 그간의 활동상황을 소개하는 영상물을 제작하여 구정홍보에 활용한다는 내용으로, 홍보성격 이외에 사료적인 가치도 있을 것임.

○ 인건비 부족액<120, 130, 132쪽> : 45억 5,507만원

일반·기능직 공무원 호봉승급 등 기본급 부족액과 금년 4월부터 시간외 근무수당이 50시간에서 53시간으로 상향조정된데 따른 부족액 및 당초예산 편성시 누락된 환경미화원 퇴직금(18명) 등 법정·의무경비를 반영한 것임. 다만 기구개편으로 기관 상호간에 예산이 증감되는 부분은 추경편성을 할 것이 아니라 상호 이체하여 집행하면 되는 것이므로(지방재정법 제47조 제2항), 보건소 예산에 이를 분리하여 편성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 기본업무추진여비<120, 131쪽> : 13억 3,478만원

공무원여비규정(대통령령) 개정으로 여비지급 단가가 종전 5천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되어 금년 4월부터 적용·시행함에 따라 추가 소요액을 반영.

○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121쪽> 1억 8,712만 7천원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경비 중 자본형성적 경비를 제외한 관리·운영경비를 추가 반영한 것으로, 주요내역은 다음과 같음.

(단위 : 천원)

인 건 비 : 104,728천원	경 상 적 경 비 : 82,399천원
· 호봉인상 급여부족액 보전 : 34,541	· 세운상가주차장 소송수임료 : 30,000
· 직원 보강(계약직 8명) : 68,603	· 홍보용 달력제작 : 8,000
· 총무팀(회계) 1, 생활관팀 5, 삼정태니스장 1, 청소년센터 1	· 직원 교육훈련비 : 5,200
· 아르바이트생 인건비 : 1,584	· 공단 소식지 및 사례집 : 7,600
	· 혁신 워크숍 등 행사비 : 9,000
	· 구민회관 샤워기 등 교체 : 6,500
	· ISO 9001 심사비용 등 : 16,099

○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121, 124, 127쪽> 1억 8,947만 6천원

시설관리공단에의 위탁사업경비 중 자본형성적 경비로써, 노후시설 개보수 등 주로 시설개선을 위한 소요예산을 반영한 사항으로 주요내역은 다음과 같음.

(단위 : 천원)

구 분	주 요 편 성 내 용	비 고
총 무 팀	· 구민회관 및 생활관탐 노후책상 교체 : 19,048 · 본부 온수기 교체 및 컴퓨터 등 사무기기 구매 : 5,794	121쪽
구 민 회 관	· 수영장 여과기(1대) 설치 : 32,000 · 헬스장비(런닝머신 3, 아령 1세트) 구매 : 10,500 · 탈의실 에어컨 설치 운동처방실 비품 구매 : 13,300 · 전산장비(컴퓨터 4대, 모니터 등) 구매 : 7,000 · 보일러 밸브교체 및 전화 자동응답장치 등 : 10,100	124쪽
올 림 픽 국민생활관	· 2층 샤워장 개보수 공사 : 33,656 · 수영장 자동크리너 1대 교체 : 10,450 · 헬스장비(런닝머신 5, 싸이클 2) 구매 : 17,800 · 개인 사물함(2단 400개, 6단 200개) 구매 : 16,200 · 기타 노후 음향장비 구매 등 : 13,628	127쪽
합 계	189,476천원	

○ 소송배상금<123쪽> : 2억 2천만원

주식회사 푸른이상호저축은행이 위조 호적등본과 관련하여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우리구가 1, 2심 모두 일부패소하였으나, 상고심에서 파기환송(2006. 6. 15)되어 환송1심(고등법원)을 준비 중에 있는 상황으로써, 연내 판결확정시 소요 배상금을 반영한 내용임.

○ 전산개발비<123쪽> : 6천9백만원

역사·문화·관광 홈페이지 보완 및 신규사이트 구축 등 현재 운영 중인 홈페이지를 지속 보완하고, 증가하고 있는 개인정보 노출 및 악용사례 차단 등 프로그램 개발 및 개인정보보호 전용솔루션 도입·구축비 계상.

○ 신청사 건립기금 적립<125쪽> : 10억원

신청사 건립을 위한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년간) 총 840억원을 목표로 적립하여 왔으나, 2006년 6월 30일 현재 기금 적립액이 104억 2,424만 2천원(목표액의 12.4%)에 불과한 실정이므로 특별 교부금 확보 등 기금 목적달성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단위 : 천원)

적립기간	합 계	원 금			이 자
		소 계	구 비	시 비	
2003. ~ 2006. 6	10,424,242	10,014,841	6,500,000	3,514,841	409,401

○ 연금·국민건강보험금<126, 131쪽> : 18억 3,733만 6천원

당초예산 편성시 미반영된 보전금 및 신규임용자 추가부담 등 연금부담금 부족액과 2006년 1월부터 건강보험료율 인상(종전 2.155% → 2.4%)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부담금 추가소요액 반영.

○ 시민체육대회 운영비<126쪽> : 3천만원

서울시에서 주최(생활체육협의회 주관)하는 시민체육대회에 25개 자치구 생활 체육 동호인들이 참가하는 행사로써, 금년이 제2회째로 당초예산에 미반영.

○ 종로문화체육센터 건립<127쪽> : 34억 8,697만 3천원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한 다양한 체육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건립 중인 종로문화체육센터가 2007년 1월 준공예정임에 따라 마무리 공사를 위한 잔여 사업비를 반영한 것으로, 차질없는 공사 준공은 물론 개관 후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운영시스템과 관련한 사전 준비에도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임.

(단위 : 천원)

구 분	총 사업비	'2005이전 집 행	'2006 예산			
			소 계	전년도 명시이월	기정예산	금회추가
합 계	15,865,842	10,998,869	4,866,973	600,000	780,000	3,486,973
구 비	13,705,842	9,118,869	4,586,973	600,000	500,000	3,486,973
시 비	2,160,000	1,880,000	280,000	-	280,000	

○ 무악동 청사건립<127쪽> : 9억 3,616만 1천원

연면적 544.56평(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서, 2005년도 예산에 10억2,552만 5천원을 편성하였으나 공사계약 지연으로 전액 명시이월되었고, 2006년 5월 건축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2007년 4월 준공 목표로 사업시행 중에 있는 바, 소요예산을 편성.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2005이전 집 행	2006 예 산				2007이후
			소 계	명시이월	기정예산	금회추가	
합 계	3,187,000	-	2,975,686	1,025,525	1,014,000	936,161	211,314
공사비	2,695,572	-	2,695,572	1,025,525	1,014,000	656,047	-
부지교환등	491,428	-	280,114	-	-	280,114	211,314

○ 폐기물 적환장 확보<133쪽> : 1억 5,500만원

고양시 덕양구 소재 서울시 소유부지 일부(2,000㎡)에 폐기물 적환장을 추가 확보하기 위한 시설공사 및 압축기 등 설치비용으로써, 기 확보된 부지가 협소하여 작업이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 예산확보 즉시 시행 필요.

○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135쪽> : 3천만원

노인복지법 규정의 시설기준에 따라 설치·신고된 경로당에 대해 운영비 및 난방연료비를 지원하는 시비보조사업으로써, 당초예산 편성시 내시된 시비보조금이 축소 지원(112,000 → 84,370천원)됨에 따른 부족액 등 반영.

※ 경로당 현황

계	설 립 주 체		건 립 유 형		난방형태별	
	구 립	사 립	아파트	단 독	유 류	도시가스
54개소	50개소	4개소	7개소	46개소	2개소	52개소

○ 청운 소규모요양시설 설치, 운영<135, 136쪽> : 2억원

65세이상 노인중 치매, 중풍 등 요양이 필요한 노인들에게 신체적·정신적 서비스 및 재활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요양시설 건립을 위해 국·시비 보조금 3억 8천만원이 내시됨에 따라, 전 서부여성문화센터를 리모델링 하여 시설을 확보하고 소요비품 구입 등 구비 소요액을 반영한 것으로, 유 휴공공시설 활용 등 예산절감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봄.

○ 종로노인종합복지관 물품구입<136쪽> : 6억원

종로노인종합복지관 건립을 위한 특별교부금 25억원이 추가지원(2006. 4. 21)되어 건물준공이 2007년 1월로 예정됨에 따라, 기정예산 중 사업비가 초과 확보된 구비 6억원을 경정하여 시설운영에 필요한 각종 진료장비 등 개관에 대비한 물품구입비 반영.

<특별회계>

-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87만 6천원이 감소($\Delta 2.1\%$)한 4,139만 4천원이며, 감소내역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 등이 감소된 내용입니다.

V. 관계법령 및 참고자료

○ 지방재정법

제45조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동일 회계연도내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47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예산이체) ②지방자치단체의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로 인하여 관계 기관 사이에 직무권한 그 밖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그 예산을 상호 이체(移替)할 수 있다.

제50조 (세출예산의 이월) ①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특히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2006. 7. 1. 행정기구개편 요약

현 재			변 경		
국명	과명칭	기구수	국명	과명칭	기구수
계		27	계		28
	○ 감사담당관	1		○ 감사담당관	1
행정관 리국	○ 총무과 ○ 기획예산과 ○ 자치행정과 ○ 민원봉사과 ○ 문화진흥과 ○ 여권과	6	행정관 리국	○ 총무과 ○ 기획예산과 ○ <u>자치행정과</u> (자원봉사업무 주민생활지원국 이관) ○ 민원봉사과 ○ <u>소속 변경</u> (→ 주민생활지원국) ○ 여권과	4
재무국	○ 재무과 ○ 세무1과 ○ 세무2과 ○ 지적과	4	재정경 제국	○ 재무과 ○ <u>산업환경과</u> (← 생활복지국) - 환경위생과 환경업무 인수 ○ 세무1과 ○ 세무2과 ○ 지적과	5
생활복 지국	○ 사회복지과 ○ 지역경제과 ○ 환경위생과 ○ 청소행정과	4	주민생 활지 원국	○ <u>주민생활계획과</u> (신 설) ○ <u>사회복지과</u> (사회복지기능) - 지역경제과 고용정책업무 인수 ○ <u>가정복지과</u> (가정복지기능) - 주택과 주거지원업무 인수 ○ <u>소속변경</u> (→ 재정경제국) - 산업환경과로 명칭변경 ○ <u>부서폐지</u> (환경업무는 산업환경과로) (위생업무는 보건행정과로) ○ <u>문화진흥과</u> (← 행정관리국) ○ 청소행정과	5
도시관 리국	○ 주택과 ○ 도시계획과 ○ 건축과 ○ 공원녹지과 ○ 균형발전추진단	4	도시관 리국	○ <u>주택과</u> (주거지원업무 가정복지로 이관) ○ 도시계획과 ○ 건축과 ○ 공원녹지과 ○ 균형발전추진단	5
건설 교통 국	○ 건설관리과 ○ 토목과 ○ 재난안전관리과 ○ 교통행정과 ○ 교통지도과	5	건설 교통 국	○ 건설관리과 ○ 토목과 ○ 재난안전관리과 ○ 교통행정과 ○ 교통지도과	5
보건 소	○ 보건행정과 ○ 보건지도과 ○ 의약과	3	보건 소	○ <u>보건위생과</u> (환경위생과 위생업무 인수) ○ 보건지도과 ○ 의약과	3